

Newstart Allowance (구직 보조금)을 받으면서 일도 하고 계십니까?



We speak your language ☎ 13 1202

Are you receiving Newstart Allowance and working? - Korean

센터링크는 Newstart Allowance의 적정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상황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본인이나 파트너가 일을 시작하면 센터링크에 알려 주십시오
- 일을 한 날에 대해 2주마다 작성하는 보고서 양식에 매일 매일의 수입을 기록하여 센터링크에 알려 주십시오. 이 때, 아직 받지 않은 보수도 기록해야 합니다
- 일을 한 시간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
- 본인의 총수입을 센터링크에 알려 주십시오. 총수입이란 세금과 다른 공제액을 빼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
- 보고서를 4주, 6주, 8주, 10주 혹은 12주 마다 제출하는 경우 그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면 전화 **13 1202**번으로 즉시 알려 주십시오
- 고용주에게 벌칙금 혹은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
- 2주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에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십시오
- 본인이나 파트너가 여러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 고용주별로 수입을 구분해서 센터링크에 알려 주십시오
 - 어느 Centrelink 사무소에서든지 받을 수 있는 Casual Income Record (비정규 소득 기록 양식)를 이용하면 수입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

- 신고서 제출일이 임금 지급일과 맞도록 날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센터링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이나 파트너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황 변화를 센터링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

- 보조금 지급의 중단 혹은 지연, **그리고/혹은**
- 초과 수령액의 환불, **그리고/혹은**
- 경우에 따라 환불 수수료 추가 부담.

일을 함으로써 활동 상황 조사를 만족시키되 2주 간의 작업 시간이 30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Centrelink에 즉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.

Centrelink와 상담을 하실 때 한국어를 사용하시려면 전화 **13 1202***번을 이용하십시오.
www.centrelink.gov.au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도 제공되어 있습니다.

* 일반 전화로 "13"으로 시작하는 번호로의 통화는 호주 내 어디서든지 시내 전화 요금으로 가능합니다 (전화 회사에 따라 통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). "1800"번으로 시작하는 전화 번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공중전화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할 경우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www.centrelink.gov.au



Australian Government



MCLW025KOR.0608 (page 1 of 1)